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년 5월호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금강원,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세무정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1) 개요

2017년 5월 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8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① 현황

i) 현행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관리종목 지정 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ii) 지정감사제의 주요 취지는 감사인 지정을 통한 분식회계의 방지이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여 해당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이 된 회사를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② 개정내용

i)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ii) 이에 따라, 현행 지정대상 예외 사유인 “주식 거래량 미달” 외에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및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이 추가됨.

관리종목 사유	지정감사 여부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지정
-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지정
-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 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지정
-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지정
- 주가(액면가 20%)/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지정
-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비지정
-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비지정(신규)
- 시가총액 미달(시가총액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비지정(신규)

- iii) 해당 개정으로 관리종목 관련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리종목 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내부신고자**포상금 한도 상황**

- ③ 시행시기: 5월 8일 공포 즉시 시행함.

나.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 상황:

① 현황

- i)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억에 불과하여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ii) 내부고발은 회계부정 적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② 개정내용

- i)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ii) 포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내부고발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③ 시행시기: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임(2017년 11월 9일부터)

지배-종속간**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다. 지배-종속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① 현황

- i)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ii)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기간 불일치로 인해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 근거가 없음.

② 개정내용

- i)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ii) 감사인 선임 스케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동일감사인 선임으로 인해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③ 시행시기: 5월 8일 공포 즉시 시행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05.02)

금감원,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1) 개요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17.3.29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 감리 실시대상

- i)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감리 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를 통해 감리회사 수를 대폭 확대(전년도 133사에서 172사로 확대)할 예정임.
- ii)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나. 2017년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 i) 취약업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회계분식 고위험회사(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 회사,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회사 등)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 발견 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 ii)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위한 감리인력 확충 및 감리 효율화: 감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8년까지 66명 목표)하고, 테마감리(*) 확대,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감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장법인의 감리주기 단축을 도모할 예정임.

(*) 2017년 테마감리 분야: ①비시장성 자산 평가, ②수주산업 공시, ③반품·교환 회계처리, ④파생상품 회계처리

다.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1),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2), 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1) 2017년부터 의무 위반에 대한 감경 배제 예정(감사인지정 2~3년, 임원 해임권고까지 가능)

(*2) 회사의 회계 위반에 대해 감사(감사위원)는 원칙적으로 감독 소홀 책임(정도에 따라 해임권고까지 가능)을 지며,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책임성 미흡, 지원조직의 부실 등의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가능

라.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제도 개선 유도: 직전 품질관리결과 등을 감안하여 취약부문 중심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며,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할 예정임.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04.05)**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17년 3월 21일 고시함.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6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2017년 6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2018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5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 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
-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①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②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특수관계법인과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7년 6월 30일(금)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요건 판단

다음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①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자일 것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10%)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증여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 12 조의 2 제 1 항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중소기업의 경우는 5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들이 증여자에 해당되며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상기 표에서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 적용합니다.

-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의 2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 2 조 제 1 호의 3 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 2 조 제 1 호의 4 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5 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과 거래한 매출액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세 납세절차

(1)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로써 2016년 12월 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7년 3월 31일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17년 6월 30일(금)까지입니다.

(2) 신고할 경우의 혜택 및 무신고시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무신고가산세(일반)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부정)	산출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미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 현재의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주
요
내
용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소유자로 봅니다(단,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 및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2)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이 신고대상연도(2016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①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분	과 태 료 대 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한 금액
과소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합니다.
- ③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

(4)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체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법인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비감면대상사업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 사업별 소득의 구분 및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만큼, 이러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그 전체 매출액을 기초로 한 원가비례법 등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 두 64043 판결).

■ 결손법인에 자산 무상제공시 증여세 부과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6호)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

